

# 대학원위원회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 대학원 학칙 의거 본 대학 산하 대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원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설치,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위원은 대학원장, 신학대학원장, 교무처장, 각 학과장등 7인이상으로 구성하며,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,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보직 임기로 한다.

**제4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에 관한 학칙, 제 규정의 제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5. 학술·전문 학위의 전공영역 및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
6.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학생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8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**제5조(회의)** ①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제4조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심의할 사항이 필요할 경우
2.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
3.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그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제를 확정·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,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6조(위원회의 관장)**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의 회의사항을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마친 후 보존한다.

**제8조(회의록 서기, 간사)**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서기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하며,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따른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